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김희경

전화 02-3219-4420 / 팩스 02-3219-2397

보도자료 2022. 12. 8.(목)

제 목

자신을 따르는 소규모 투자자인 회원들을 속여 수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주식리딩방 운영자 구속 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일시, 공소제기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금일(12. 8.)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카카오톡 주식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주식을 매수한 후 되팔아 차익을 남기기 위해 미리 고가로 매도주문해둔 상태에서,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자신을 따르는 소규모 투자자인 회원들을 속여 해당 종목을 고가에 매수하도록 추천하는 일명 ‘선행매매’ 수법으로 약 7개월 동안 3억 6,4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A를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구속 기소하였음

※ 참고로 A는 국내 증권사가 주최하는 실전 주식투자대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리딩방 소속 회원들을 속여 시세차익을 얻는 수법으로 참가자 중 수익률 1위를 달성한 바 있음(본건 범행 발각되어 수상자격 발탁됨)

1

피고인

- A (29세, 유사투자자문업체 운영)

2

범죄사실 요지

- '22. 3. 7.경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카카오톡 리딩방 회원들을* 상대로 코스닥 상장 B 주식 등 28개 종목에 대해 매매추천을 하면서 선행매매**하여 약 3억 6,400만 원의 부당이득 취득[자본시장법위반]

* 피고인은 10여 개의 카카오톡 무료 리딩방을 동시 운영, 1개 리딩방에서 60~100명 정도의 회원들이 A의 추천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였음

**** 피고인의 선행매매 방법(예시)**

① B주를 10,000원에 매수한 후 11,000원에 매도하겠다는 주문을 미리 제출해 둠 → ② 리딩방 회원들에게 'B주 11,000원 이하 매수'라고 추천 → ③ 리딩방 회원들의 B주에 대한 고가 매수주문 제출 누적되어 주가가 11,000원까지 상승 → ④ 피고인이 미리 제출해 둔 주문(11,000원 매도)에 따라 우선적으로 자동 계약체결, 시세차익 실현

3 주요 수사 경과

- '22. 10. 7. 금융위·금감원 패스트트랙 접수
- '22. 10.~11. 사무실 등 압수수색, 피의자신문 등
- '22. 11. 22. A 구속
- '22. 12. 8. A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구속 기소

※ 금융감독원은 사건 이첩 후에도 추가 매매분석 등 적극 지원

4 참고사항

- 카카오톡 리딩방 운영자인 피고인은 소규모 투자자인 회원들을 속여 하루 평균 2,420만 원(1일 250만 원~9,950만 원, 선행매매를 한 15거래일 기준)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
- 리딩방 회원들은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되거나, 자신 스스로도 주가 조작을 위한 범행도구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검찰은 향후에도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선량한 서민 투자자들을 울리는 주식리딩방 이용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벌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박탈할 것임 